

##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신 설>	<p>제4조의2(대출계약 철회)</p> <p>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일(이하, "철회기한"이라 한다) 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</li> <li>2.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</li> <li>3.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(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)</li> </ol> <p>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</li> <li>2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</li> <li>3.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</li> </ol> <p>④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⑥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</li> <li>2.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</li> </ol>	<p>- 금융위 요청에 의한 대출계약철회권 신설 반영</p>

<p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</p> <p>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, 은행으로부터의 독촉·통지 등이 없어도,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(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1. ~ 4.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</p> <p>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, 은행으로부터의 독촉·통지 등이 없어도,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(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기한이익 상실 근거 명확화(금감원 요청사항 반영)</p>
<p>제8조(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)</p> <p>① ~ ③ 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제8조(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, 은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	<p>-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 통지 강화(금감원 요청사항 반영)</p>
<p>제17조(통지의 효력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<u>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</u>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7조(통지의 효력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<u>내용증명에</u>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	<p>-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중요 의사표시에 대한 통지수단 완화(금감원 요청사항 반영)</p>